

## 特許明細書 作成과 請求範圍 記載要領



許 尙 勳  
(辨理士)

### ◎ 目 次 ◎

- I. 特許와 明細書
- II. 明細書의 記載 不備
- III. 特許出願 및 明細書 作成要領  
(이번號에 全載)

### I. 特許와 明細書

#### [1] 特許制度和 明細書 관계

特許制度는 發明者에게 유익한 發明을 公開시킴으로써 국가의 技術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公開된 發明을 기초로 해서 제3자에게 또 다른 發明을 유도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려는데 있다. (特許法 第1條)

한편 特許가 登錄된 후에는 發明者는 물론 제3자에게도 그 發明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등 사회에 이용되는 길을 열고, 그 결과로서 국가의 産業發展에 더 나아가서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發明者에게는 일정기간의 獨占權을 부여함으로써 發明者의 保護와 發明의 獎勵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特許制度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新規의 發明을 한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가 있는데, 特許權을 얻기 위해서는 特許法에 적합한 出願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出願書에는 반드시 明細書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發明者가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特許法에서 규정한 樣式 및 節次에 따라 出願書를 제출해야 하고 그 出願書에는 發明에 대한 技術的 내용을 포함한 明細書를 첨부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특히 明細書는 發明의 技術내용을 公開하는 『技術文書』임과 동시에 特許權으로서 獨점배타적인 權利를 주장하는 『權利文書』로서뿐만 아니라 審査의 실제 대상이기 때문에 明細書의 작성은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特許紛爭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검토가 요구되는 점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明細書는 發明을 객관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特許制度의 실질적인 요체이다. 즉 發明에 대하여 權利를 취득하고자 하는 者는 그 發明의 성과를 明細書에 문장에 의해 개시한 서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이 明細書의 기재내용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權利의 技術的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技術的 내용을 명확하게 公開하여 사회에서의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特許法은 明細書의 내용에 대해 法律에 의해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明細書에는 『發明의 名稱』 『圖面의 간단한 說明』 『發明의 상세한 說明』 및 『特許請求의 範圍』를 순차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實用新案登錄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중 『상세한 說明』과 『特許請求의 範圍』에 있어 전자는 發明을 직접 公開하는 技術文獻으로 목적이 있는 것이고, 후자는 權利의 保護範圍를 결정하는 점에서 明細書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特許制度上 明細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發明의 技術的 범위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發明에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者가 그 發明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發明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종래 技術과의 관계와 대비하여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2] 明細書의 역할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明細書는 發明의 이용을 위하여 公開하는 技術文獻으로서, 獨占權의 범위를 확정하는 權利로서, 또한 獨占權의 부여를 위한 審査時의 實施대상으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 1. 技術文獻으로서의 역할

明細書의 發明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發明에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發明의 내용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하고 또한 圖面에는 發明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圖示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發明의 내용은 出願公開등에 의해 公告되어 제3자에게 技術文獻으로서 이용되므로 技術의 진보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갖는다.

### 2. 權利文書로서의 역할

明細書의 特許請求의 범위는 그 發明의 保護範圍를 정하는 기초가 되며, 동시에 明細書 및 圖面은 登錄후에 登錄原簿의 일부가 되어 權利文書의 역할을 갖는다. 또한 發明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發明의 保護範圍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 3. 出願·審査의 대상을 특징하는 역할

특히 明細書중에서 特許請求의 범위는 出願인이 權利부여를 請求하는 범위로서 出願 및 審査의 대상을 특징하는 역할을 갖는다. 審査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出願된 發明에 獨占權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發明이 特許法의 登錄要件을 구비하고 있는가를 審査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新規性(特許法 第6條 第1項), 進歩性(特許法 第6條 第2項) 등의 特許要件을 구비하고 있는가를 特許請求範圍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때 明細書의 發明의 상세한 설명 및 圖面은 特許請求의 범위에 기재된 發明의 이해를 용이하게 판단하기 위해 審査에 참조하게 된다.

또한 明細書 및 圖面은 審査對象으로서 역할을 가지므로 出願후에는 보정 및 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3] 明細書의 종류

特許法에서 말하는 發明이란 自然法則을 이용한 技術的 사상의 創作으로서 고도의 것(特許法 第5條)을 말한다.

이와같이 發明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인 관념이어서

이를 文書化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실사 文書化를 하여도 그 發明이 保護對象의 파악이 곤란하고 특히 구체적인 特許侵害訴訟이 발생했을때 侵害物과 비교판단도 어렵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發明을 『物件의 發明』과 『方法의 發明』으로 구분하고, 『方法의 發明』은 다시 『物件生産하는 方法의 發明』과 『기타 方法의 發明』으로 세분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特許를 出願하고자 할 때는 상기 3가지 카테고리(Category) 중에서 出願하고자 하는 發明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표현하되, 어느 카테고리를 선택하더라도 明細書중에 發明의 名稱, 發明의 상세한 說明 및 特許請求의 範圍에 일관성 있게 동일한 카테고리로서 표현해야만 한다.

### 1. 物件의 發明

物件의 發明은 化學物質 자체, 機械 및 機械裝置등과 같이 物件의 형태로 표현된 發明을 말한다.

### 2. 物件을 生産하는 方法의 發明

物件을 생산하는 方法의 發明은 化學物質의 製造方法등과 같이 어떤 생산물을 製造하는 方法으로 표현된 發明을 말한다.

### 3. 기타 方法의 發明

기타 方法의 發明은 공기 또는 매연의 아황산가스농도의 측정방법, 수차 또는 펌프수차의 운전방법등과 같이 생산물이 다르지 않은 方法의 형태로 표현된 發明을 말한다.

## [4] 明細書作成의 요령

特許出願의 대상이 되는 發明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自然法則을 이용한 技術的 사상의 創作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發明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發明의 내용을 구두 또는 물건으로 특정시키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出願, 審査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불편하다.

따라서 特許法은 發明의 技術的 사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여러 절차에 있어서도 편리한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出願時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出願書와 明細書 및 필요에 따라 圖面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特許法은 特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特許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特許出願書에는 明細書 및 圖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特許法 第8條)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特許法の 시행규칙에는 特許廳에 제출하는 出願·請求 및 기타의 節次는 法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特許法 施行規則 第1條)라고 규정하여 서면주의의 내용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 1. 出願書 기재내용

出願書는 發明者가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서면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순서로 기재(特許法 第8條 第1項)하여야 한다.

- 1) 特許出願人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도 기재할것)
- 2) 特許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 3) 제출년월일
- 4) 發明의 名稱
- 5) 發明者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 2. 明細書의 기재내용

明細書는 發明의 技術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特許制度上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다음의 사항을 순서있게 기재하여 特許出願書에 첨부(特許法 第8條 第2項)하여야 한다.

- 1) 發明의 名稱
- 2) 圖面의 간단한 說明
- 3) 發明의 상세한 說明
- 4) 特許請求의 範圍

### 3. 發明의 상세한 說明의 기재내용

發明의 상세한 說明에는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發明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特許法 第8條 第3項)하여야 한다.

### 4. 特許請求範圍의 기재내용

特許請求의 範圍는 明細書에 기재된 사항중 보호를 받고자하는 사항을 1 또는 2이상의 項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特許法 第8條 第4項)하여야 한다.

이상의 각 기재내용에 상세한 설명은 사례를 중심으로 후술하기로 한다.

## II. 明細書의 기재불비

明細書 기재가 잘못된 경우 特許廳에서는 일정한 審査基準에 의거 特許出願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明細書 작성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것은 이 審査規程을 잘 이해하고 사전에 特許出願이 이 審査規程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사전대비 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면 審査官으로부터 송부되어 오는 거절이유통지서의 거절이유 내

용을 보면 「본 發明은 본 發明에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發明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가 상세히 기재가 되지 않음이 인정되므로 特許法 第8條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特許를 받을 수 없다」라는 형식 등으로 거절이유를 밝히고 있다.

### [1] 發明의 名稱 또는 圖面의 간단한

#### 說明欄의 기재가 부적당한 경우

發明의 名稱 또는 圖面의 간단한 說明의 欄의 기재가 發明의 상세한 說明 또는 特許請求의 範圍와의 관련에 있어서 부적당한 경우에는 發明의 상세한 說明에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發明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發明의 구성에 있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特許法 第8條 第3項 또는 第4項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것을 이유로 하여 거절된다.

### [2] 明細書의 發明의 상세한 說明의 欄의 기재가 불비하여 發明의 내용이 불명료한 경우

1. 明細書의 發明의 상세한 說明의 欄(圖面이 있는 경우는 이것을 포함)에 그 發明에 대하여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또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그 發明內容이 불명료한 경우 그 特許出願은 特許法 第8條 第3項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된다.

2. 微生物(動·植物의 세포주 포함) 관련 發明에 있어서는 明細書의 發明의 상세한 說明欄에 그 微生物이 신규한 경우 그 出願人 이전에 同 微生物을 기탁기관에 기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결정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特許出願은 特許法 第8條 第3項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 [3] 目的 具體化를 위한

#### 技術的 수단을 결한 發明

特許出願發明이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결여한 것일 경우에는 特許法 第8條 第3項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거절된다.

發明은,

- 1) 일정한 목적
- 2) 그 목적달성을 위한 技術的 구성
- 3) 그 결과 발생하는 효과

의 3요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으로 發明의 상세한 說明의 欄에는 구체화된 技術의 수단이 표현되어 비로소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技術의 수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特許法 第8條 第3項의 규정을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된다.

#### [4] 特許請求의 範圍欄의 기재가 불비한 경우

特許請求의 範圍欄의 기재가 불비하여 發明의 상세한 說明의 欄에 기재한 發明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외의 사항을 기재하였을 때는 그 特許出願이 特許法 第8條 第4項 및 第5項에 규정하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거절된다.

#### [5] 特許請求의 範圍의 記載가 特許法 第8條 第4項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의 예

特許請求의 범위의 기재가 特許法 第8條 第4項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特許請求의 範圍의 記載내용이 技術적으로 이해되지 않을때
- 2) 特許請求의 범위에 發明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發明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지 않을때
- 3) 다수항 중속 형식으로 기재한 중속항이 타의 다수항 중속 형식으로 기재한 중속항을 인용함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이 技術적으로 이해되지 않을때

#### [6] 特許請求의 範圍의 기재가

##### 特許法 第8條 第5項에 위반되는 경우

特許法 第8條 第5項에 규정(동항 규정에 의한 特許法 시행령 2條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特許請求의 범위에 기재된 각 請求項에 대하여 그 기재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각 請求項에 기재된 技術내용으로 보아 그것이 發明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인가, 發明의 중속항인가 또는 그 중속항이 어느 獨立項의 중속항인가를 검토하여 그 결과 각 請求項의 기재형식이 特許法 施行令 2條의 3 규정을 만족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特許法 第8條 第5項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한다.

#### [7] 特許請求範圍의 기재가 特許法 第8條 第5項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의 예

特許請求範圍의 기재가 特許法 第8條 第5項의 규

정(동항의 규정에 의한 特許法 施行令 第2條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發明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 즉 獨立項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 중속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을때(特令 2條 1項 위반)
2. 發明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과 그 發明의 중속항이 1請求項으로 기재되었을 때(1項 및 3項 위반)
3. 2이상의 獨立項으로 기재할 사항(發明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1獨立項으로 기재하였을 때(2項 위반)
4. 1獨立項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2이상의 獨立項으로 기재하였을 때(2項 위반)
5. 獨立項과 중속항에 있어 형식은 틀리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이중적으로 별도의 請求項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2項 및 3項 위반)
6. 2이상의 중속항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1중속항으로 기재하였을 때(3項 위반) 다만, 2이상의 중속항이 다수항 중속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1중속항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2이상의 중속항으로 기재하였을 때(3項 위반)
8. 중속항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독립형식으로 기재하였을 때(4項 위반)
9. 他請求項을 인정할시, 그 他請求項에 부여된 번호로서 인용하지 않았을 때(4項 위반)
10. 2이상의 請求項을 인용하는 중속항에 있어 그 인용이 택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5項 위반)
11. 2이상의 항을 인용한 중속항이 2이상의 항을 인정한 다 중속항에 인용되었을 때(5項 위반)
12. 중속항이 그 중속항보다 후에 기재된 항을 인용한 경우(6項 위반)
13. 請求項에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7項 위반)
14. 請求項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7項 위반)
15. 전청구항을 통하여 기재순서에 의한 일련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을 때(7項 위반)

#### [8] 特許請求의 범위의 欄등에 商標名(登錄商標名을 포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1. 명세서에 特許請求의 범위, 기타 發明의 요지(特許후의 特許發明의 技術的 範圍)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商標名(登錄商標를 포함, 이하 동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特許法 第8條 第3項 또는 第4項이 규정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혹은 特許法 第5條 및 第6條의 發明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다.

## 2. 단서조항으로서

1) 그 商標名이 物質 또는 物品의 보통명칭화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物質 또는 物品의 보통명칭화가 되어있지 않아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거절의 이유에 속하지 않는다.

① 類似品中에서 특히 그 商標名을 선정한 것에 發明으로서 충분한 의의가 인정될 때

② 商標名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發明의 요지가 불명확하지 않는 것(예를 들면 그 商標는 적어도 그 發明의 特許出願 이전부터 出願當時에 걸쳐 통상 일정의 품질, 조성, 구성등의 것에만 사용되어 온 것이 명확할 것)

③ 商標名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發明의 기술이 충분히 公開되어 있음이 인정될 것(예를 들면 그 商標名 상품의 시판이 어떤 이유로 정지되어도 그 發明과 실질상 등일의 發明을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

## Ⅲ. 特許出願 및 明細書 작성요령

### [1] 發明의 名稱 기재요령

發明의 名稱은 그 發明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發明의 名稱은 너무 막연한 기재나 또한 너무 긴 기재를 피하여 發明의 내용에 따라 간명하게 기재한다.

2. 個人名, 商標名, 商品의 애칭, 극히 추상적인 성능만 나타내는 표현(예: 최신식, 문명식 등) 또는 『特許』라는 用語를 發明의 名稱에 넣어서는 안된다.

3. 特許請求의 範圍에 카테고리나 상이한 發明(물건, 제조방법, 제조장치 등)을 기재할 때는 이들을 發明의 名稱에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종이, 그 製造方法 및 그 製造裝置』와 같이 기재한다.

4. 發明의 名稱은 特許請求範圍에서 사용되는 用語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5. 發明의 名稱은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를 알 수 있게끔 기재한다.

### [2] 圖面의 간단한 說明의 기재요령

1. 圖面의 간단한 說明欄에는 첨부된 圖面의 하나 하나에 대하여 어떤 곳을 표시한 圖面인지를 기재함과

동시, 圖面의 주요한 부분을 표시하는 부호의 설명을 기재한다.

예: 제1도는 전체를 조립한 평면도

제2도는 ○○ 부분을 표시한 정면도

제3도는 ○○ 부분의 종단면도

다만 化學的 方法에 관한 發明등에서와 같이 그 설명에 圖面이 필요치 않는 경우에는 이欄은 필요가 없다.

2. 제도법에 따라 작도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로서 결정구조, 금속조직, 섬유형상, 입자의 구조, 생물의 형태, 오실로(Oscillo)파형 등을 표현하고 있는 사진은 圖面으로서 채용한다. 이 경우 사진은 명료한 것으로 公報에 게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3. 實用新案 明細書인 경우는 『圖面의 간단한 說明』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3] 發明의 상세한 說明의 기재요령

1. 發明의 상세한 說明에는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發明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다음 요령과 같이 기재한다.

1) 발명이 어느 技術分野에 속하는 것인지를 기재한다. (목적)

2) 당해 技術分野에 있어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과제를 제시한다. (목적)

3)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개요를 特許請求範圍의 기재의 이해를 돕게끔 기재한다. (구성)

4) 상기 해결수단의 상세를 필요에 따라 기초적 데이터, 실시예, 비교예 등을 들어가며 설명한다. 비교예로서는 당해 發明 技術的 및 時間的으로 가장 가까운 것에 대하여 기재한다. (구성)

發明의 작용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효과)

2. 發明의 구성은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特許請求의 範圍에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구체적 구성이 이론적,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포괄적 기재에 속하는 개개의 대표적 예에 대하여 기재한다.

3. 特許請求의 범위에 수치를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그 한정의 이유를 기재한다.

4. 실시예 등에 있어 입수가 곤란한 재료, 소자등을 사용할 경우는 그 製造方法 또는 입수선을 기재한다.

5. 발명의 상세한 說明중에서 도면에 따라 설명할 때는 대응하는 圖面番號를 명기한다. 圖面에서 사용한 부호는 용어의 뒤에 ( )내에 기재한다.

6. 發明의 작용, 효과에 기재는 실시예에 있어서의 작용효과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예의 특유의 작용효과를 기재하고 發明의 작용효과를 기재에 대신하여서는 안된다.

7. 發明의 說明을 위하여 또는 종래기술의 說明을 위하여 文獻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文獻名을 인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文獻에서 인용코저 하는 필요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8. 特許청구의 範圍에 종속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속항이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어져야 한다.

#### [4] 特許請求의 範圍의 기재요령 일반

1. 特許請求의 範圍에는 發明의 상세한 說明에 기재한 發明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중 보호를 받고자하는 사항을 독립항으로 기재하고, 그 독립항 또는 타종속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한 사항을 종속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독립항은 發明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수로 기재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중복기재하여서는 안된다.

3.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타종속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수로 기재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중복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4. 特許請求의 範圍를 기재할때는 發明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인 독립항과 종속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5. 2이상의 청구항을 기재할때는 전청구항을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청구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여야 한다.

6. 特許請求範圍의 기재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圖面에 사용된 부호를 괄호를 하여 용어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부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서 구성이 불명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7. 特許請求範圍의 기재는 發明의 상세한 說明에 개시한 발명의 範圍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8. 特許請求의 範圍에는 『소망의 따라』 『필요에 따라』 『또는』 등의 用語를 기재하여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독립항의 기재에 있어서는 『또는』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표현이 없고 전체로서 1發明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9. 特許請求의 범위에서 수치로 發明의 구성을 한정

할때는 예를들면 『120~200°C 바람직하기로는 150~180°C』와 같이 이중적 한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10. 特許請求의 範圍의 기재는 필요이상으로 장황하여 發明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1. 特許請求範圍에, 예를 들어 여러가지 종류의 치차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 중 어느 특정한 치차를 지시할때는 『상기치차』 『전기치차』 『이치차』 등과 같이 기재하지 않고 『상기평치차』 『전기우산치차』 등과 같이 지시하는 대상을 명확히 기재한다.

12. 特許請求의 範圍의 기재는 發明의 상세한 說明의 기재와 모순이 없어야 하고 용어는 明細書에서 사용된 것과 통일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特許請求의 範圍의 독립항 기재요령

1. 독립항은 타의 독립항을 이용하지 않은 형식 즉 독립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독립항은 그 發明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항만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재한다.

3. 독립항의 기재는 각 구성요건을 개조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한다.

개조식 기재에는 청구항에 붙인 부호와 구별하기 위하여 (가), (나), (다), ……., (a), (b), (c), ……., (A), (B), (C), … 등과 같은 연부호를 붙인다.

#### ※ 特許請求의 範圍의 종속항 기재요령

1. 종속항을 기재할때는 特許請求의 範圍에 기재된 發明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인 독립항 또는 그 독립항의 타종속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종속항은 그가 속하는 독립항 또는 타종속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인용코자하는 행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그항의 번호만을 기재한다.

3. 종속항은 그가 속하는 독립항 다음에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아라비아 숫자)행을 바꾸어 기재한다.

4. 2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에는 인용되는 청구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2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한 종속항은 2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타종속항에 인용될 수 없다.

5. 종속항은 인용되는 독립항 또는 타종속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6. 종속항은 2이상의 독립항을 인용하여서는 안된다. <※>